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8630
----------	------

발의연월일 : 2025. 3. 4.

발의자 : 박성준 의원

찬성자 : 169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에 따르고, 동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서천호는 2025년 3월 1일 광화문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이 세력들을 함께 박살냅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셔야 합니다. 쳐부수자.”라며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

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하였음.

이는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비호를 넘어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극우 폭동 세력과 결탁해 반국가세력의 길을 도모하는 것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형법」 제87조)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죄(「형법」 제91조)에 해당함.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범죄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진 법치주의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의 무법 사태를 조장하거나, 공권력을 위협하는 폭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닌 국회의원들이 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것임. 또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습격과 난동을 조장·선동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함.

국회의원 서천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사면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이기

도 함. 공천개입의 정황에 대한 의혹을 피하고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고, 되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동을 선동한 것은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길 포기한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 서천호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회의원 서천호는 2025년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여러분 이 세력들을 함께 박살냅시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라는 발언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발언을 넘어 다수가 모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과 폭동을 적극 선전 및 선동하였음.

나. 국민들은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물리력

으로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2025년 1월 19일에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부정과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폭도로 돌변한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았음. 폭동 사태로 인한 국민적 충격과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회의원 서천호는 제2의 서부지법의 폭동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임. 이는 국민의 대표자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정질서를 짓밟고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한 것으로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음.

다. 국회의원 서천호는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다수가 모인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공격과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선동한 것은 범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형법」 제115조(소요),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치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등 다수의 중대범죄를 위반한 것임.

라. 또한 「형법」상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함.

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넘어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국가기관을 파괴 등 제2의 내란사태를 촉발하는 기폭제 같은 발언으로 국회의원 서천호의 폭동 조장·선동 발언은 국회의원 제명을 넘어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서천호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회법」 제24조,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조, 제2조, 제4조를 위반하였으며, 「형법」 제87조(내란),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형법」 제115조(소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국회의원 서천호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